

#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

(옥재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7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옥재은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윤종복, 이병윤, 이봉준, 이상욱, 이종태, 이종환, 임춘대, 최민규, 최윤희, 최진혁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46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서는 23년 전기차 약 2만 2천여 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으며, 26년까지는 전기차 4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전기차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배출량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터리의 재사용, 재활용, 재제조를 통한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를 견인하며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(안 제3조)
- 나.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 (안 제4조)

- 다.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)
- 라.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연구개발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~ 제7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,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

##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전기자동차”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.
2. “배터리”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꿔 동력을 제공하는 전지를 말한다.
3. “재사용”이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성능 평가·검사 후 그대로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재제조”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·세척·검사·보수·조정·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.
5. “재활용”이란 에너지가 제거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, 해체, 파쇄 등을 통해 소재 또는 원료를 추출하여 재자원화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 수립·시행 등)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기본방향 및 목표
2.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
3. 산업 동향 및 전망
4. 육성 및 지원 시책
5. 전문인력 양성
6.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·시행 등을 위하여 국내외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동향, 기술,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 지원)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재사용·재제조·재활용 관련 연구·개발
2.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·훈련
3.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
4. 세미나·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·유치·참여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연구개발)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의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